

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(유통물류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) 정보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 30118)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(어진동),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
- 전자우편 : melodical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37

### ●고용노동부공고제2019-109호

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·위험성, 연간 제조·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7일

고용노동부장관

※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el.go.kr>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습니다.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225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#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대박기술(주)(정현섭) ② (주)서영엔지니어링(김중훈)  
③ (주)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(정철수, 박재호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251-7904 ② 02-6915-7195 ③ 02-738-1130

2. 명칭 : 고소작업차량과 다기능케이지를 이용한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기술(slater 공법)

#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해체 / 기타 해체

## &lt;기술의 요지&gt;

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해체 공정의 대안으로 고소작업차량의 붐을 활용하는 다기능 케이지는 내부 상하작업대가 지붕 슬레이트 경사각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며, 습윤제(물)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와 해체 슬레이트를 일정량 적재 후 한번에 하역할 수 있는 적재대 및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고리를 구비하여 조종자와 작업자가 다기능케이지에 탑승 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표면위로 접근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

## &lt;범위&gt;

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해체 작업대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, 해체물 적재대 및 작업자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구비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량의 붐으로 지붕재 상단으로 이동하여 다기능케이지 내부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 후 지면으로 일괄 하역하는 석면 슬레이트 해체 공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226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#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흥원건설(원용석) ② (주)포스코(최정우)

나. 전화번호 : ① 070-8255-8240 ② 054-220-0114

2. 명칭 : 시공단계 변위제어를 위한 고강도 강연선 이용 프리텐션-포스트텐션 조합 세그먼트 교량기술(PPS거더)

#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교량거더